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6,010,442	10,080,313
일반회계	290,529,099	8,715,873
특별회계	45,481,343	1,364,440
공기업특별회계	40,594,679	1,217,840
상수도공기업	21,269,552	638,087
하수도공기업	19,325,127	579,754
기타특별회계	4,886,664	146,600
주택사업	1,405,348	42,1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4,218	1,027
의료급여기금운영	1,323,826	39,71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41,775	4,253
공영개발사업	425,482	12,764
농공지구조성사업	497,953	14,939
기반시설	106,671	3,200
장기미집행	515,600	15,468
수질개선	435,791	13,0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71,35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